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96

발의연월일: 2021. 6. 4.

발 의 자:최형두·강기윤·권명호

김성원 · 김영식 · 박성민

엄태영 · 이종성 · 정운천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법률 제 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	
시장· <u>광역시장·도지사</u> 또는 특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u>
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도지사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